

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예고문

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05. 07.

대한체육회장

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회원단체장의 궐위 및 사고 시 회장 선출 및 조직 정비 등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부여
- 재선거, 보궐선거로 회장 선출 시, 회장과 이사 임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집행부 운영을 위하여 이사 등을 새로 구성토록 함.
-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의 (예비)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, 사임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
- 선수위원회 위원의 다양한 경험 및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 겸임 허용 등

2. 주요내용

- **【제7조】**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대의원(대리인) 제한 조항 추가
 - (제2항 개정) 동조 제6항*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대의원의 대리인으로 그 자격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 명확화
 - * 대의원이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
- **【제8조】** 회원단체장 보궐선거 후 임시총회 소집 요건 추가
 - (제2항제5호 신설) 회장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확정된 때에 조속한 집행부 구성(이사 선임 등)을 위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유 추가

- 【제21조】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후 회장 선출기간 확대
 - (제2항, 제4항 개정)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후 회장 선출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기간 부여
- 【제25조제6항】 재선거, 보궐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경우 이사 임기 규정
 - (제1호 신설)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일을 새로운 회장 임기 시작 후 직근 총회일 전일까지로 규정
 - (제2호 신설)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이사 선임 총회일(위임 시 회장이 선임한 날)부터 다음 회장 당선 이후 첫 번째 총회일 전일까지로 규정
- 【제27조】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
 - (제4항 신설)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의 (예비)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봄.
- 【제37조】 선수위원회 위원의 타 위원회 위원 겸임 허용
 - (제4항 개정) 선수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변경
- 【제38조】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명시 규정 일원화
 - (제2항 개정) 「회원종목단체 규정」 및 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」 체계 불일치 및 정합성 부조화 개선을 위해 구성 요건 관련 내용 삭제
 - * (기존) 회원종목단체 「정관」 + 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」 위원 구성 요건 명시
(개선) 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」 위원 구성 요건 명시

3. 의견제출

- 이 회원종목단체 규정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- 붙임 1.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개정(안) 1부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